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5년 10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제33조 <생략>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u><신설></u> 제35조~제37조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4년 12월 20일</u>부터 시행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제33조 <좌동>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좌동>. ② <좌동> <u>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u> 제35조~제37조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5년 10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반영 개정일 명시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5년 10월 31일 개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1항제4호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24년 4월 1일 이후 계약서 추가 개정됨에 따라 단서조항 삭제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생략>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table><tr><th>적립금자산 평가액</th><th>수수료율(연)</th></tr><tr><td>~ 10억원 미만</td><td>0.40%</td></tr><tr><td>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td><td>0.35%</td></tr><tr><td>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td><td>0.30%</td></tr><tr><td>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td><td>0.26%</td></tr><tr><td>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td><td>0.23%</td></tr><tr><td>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td><td>0.22%</td></tr><tr><td>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td><td>0.18%</td></tr><tr><td>1,000억원 이상~</td><td>0.07%</td></tr></table>	적립금자산 평가액		수수료율(연)	~ 10억원 미만	0.4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0.35%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3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26%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0.23%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0.22%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0.18%	1,000억원 이상~	0.07%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좌동> 제1조~제2조 <좌동>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좌동> 1.~2. <좌동> 3. <좌동> <table><tr><th>적립금자산 평가액</th><th>수수료율(연)</th></tr><tr><td>~ 10억원 미만</td><td>0.40%</td></tr><tr><td>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td><td>0.35%</td></tr><tr><td>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td><td>0.30%</td></tr><tr><td>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td><td>0.26%</td></tr><tr><td>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td><td>0.22%</td></tr><tr><td>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td><td>0.22%</td></tr><tr><td>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td><td>0.18%</td></tr><tr><td>1,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td><td>0.07%</td></tr><tr><td>3,000억원 이상</td><td>0.05%</td></tr></table>	적립금자산 평가액	수수료율(연)	~ 10억원 미만	0.4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0.35%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3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26%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0.22%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0.22%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0.18%	1,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0.07%	3,000억원 이상	0.05%
적립금자산 평가액	수수료율(연)																																							
~ 10억원 미만	0.4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0.35%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3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26%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0.23%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0.22%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0.18%																																							
1,000억원 이상~	0.07%																																							
적립금자산 평가액	수수료율(연)																																							
~ 10억원 미만	0.4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0.35%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3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26%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0.22%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0.22%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0.18%																																							
1,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0.07%																																							
3,000억원 이상	0.05%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4. <좌동>		장기할인 구간 신설 및 할인률 확대
계약 경과년수	할인율	계약 경과년수	할인율	
2차년도	10%	2차년도	10%	
3차년도	12%	3차년도	12%	
4차년도 <u>이후</u>	15%	4차년도 ~ <u>8차년도</u>	<u>15%</u>	
		<u>9차년도 ~ 13차년도</u>	<u>19%</u>	
		<u>14차년도 ~ 19차년도</u>	<u>21%</u>	
		<u>20차년도 이후</u>	<u>25%</u>	
		4의2.~10. <생략> ② <생략> 제4조 (생략) [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생략> [별지3]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생략>		
4의2.~10. <좌동> ② <좌동> 제4조 (좌동) [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좌동> [별지3]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좌동>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5년 10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제33조 <생략>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 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u><신설></u> 제35조~제36조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부터 시행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제33조 <좌동>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좌동> ② <좌동> <u>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u> 제35조~제36조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5년 10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반영 개정일 명시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u>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u>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u>단, 2025년 10월 31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제2조제2항제3호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u>	24년 4월 1일 이후 계약서 추가 개정됨에 따라 단서조항 삭제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생략> 제1조 <생략>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생략>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생략>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 해당 계약일을 기준으로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table><tr><th>계약 경과년수</th><th>할인율</th></tr><tr><td>2차년도</td><td>10%</td></tr><tr><td>3차년도</td><td>12%</td></tr><tr><td>4차년도 <u>이후</u></td><td>15%</td></tr></table>	계약 경과년수		할인율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u>이후</u>	15%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좌동> 제1조 <좌동>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좌동> ② <좌동> 1.~2. <좌동> 3. <좌동> <table><tr><th>계약 경과년수</th><th>할인율</th></tr><tr><td>2차년도</td><td>10%</td></tr><tr><td>3차년도</td><td>12%</td></tr><tr><td>4차년도 ~ <u>8차년도</u></td><td><u>15%</u></td></tr><tr><td><u>9차년도 ~ 13차년도</u></td><td><u>19%</u></td></tr><tr><td><u>14차년도 ~ 19차년도</u></td><td><u>21%</u></td></tr><tr><td><u>20차년도 이후</u></td><td><u>25%</u></td></tr></table>	계약 경과년수	할인율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 <u>8차년도</u>	<u>15%</u>	<u>9차년도 ~ 13차년도</u>	<u>19%</u>	<u>14차년도 ~ 19차년도</u>	<u>21%</u>	<u>20차년도 이후</u>	<u>25%</u>
계약 경과년수	할인율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u>이후</u>	15%																							
계약 경과년수	할인율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 <u>8차년도</u>	<u>15%</u>																							
<u>9차년도 ~ 13차년도</u>	<u>19%</u>																							
<u>14차년도 ~ 19차년도</u>	<u>21%</u>																							
<u>20차년도 이후</u>	<u>25%</u>																							
3의2.~8. <생략>	3의2.~8. <좌동>																							

■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5년 10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제27조 <생략>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설> 제29조~제31조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사전지정운용방법 상품 명칭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는 [별지1]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3조 제1항 1의3, 3의2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제27조 <좌동>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좌동> ② <좌동>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9조~제31조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삭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반영 개정일 명시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제 2 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 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운용관리 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제도를 적용합니다.			제 2 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 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5년 10월 31일 개정 운용관리 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1항제3의2호 적용 예시, 제3조제1항제3의3호, 제3조제1항제11호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24년 4월 1일 이후 계약서 추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단서조항 삭제 및 개정사항 적용시기 명시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생략>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의 운용관리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2. <생략> 3. <생략> <table><tr><th>적립금자산 평가액</th><th>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th><th>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th></tr><tr><td><u>1억원 미만</u></td><td>0.25% <u>(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u></td><td>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td></tr><tr><td>1억원 이상</td><td>0.20% <u>(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u></td><td>0.06%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td></tr></table>			적립금자산 평가액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u>1억원 미만</u>	0.25% <u>(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u>	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1억원 이상	0.20% <u>(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u>	0.06%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좌동> 제1조~제2조 <좌동>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좌동> 1.~2. <좌동> 3. <좌동> <table><tr><th>적립금자산 평가액</th><th>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th><th>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th></tr><tr><td><u>5천만원 미만</u></td><td>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td><td>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td></tr><tr><td><u>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u></td><td>0.25% <u>(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u></td><td>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td></tr></table>			적립금자산 평가액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u>5천만원 미만</u>	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u>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u>	0.25% <u>(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u>
적립금자산 평가액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u>1억원 미만</u>	0.25% <u>(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u>	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1억원 이상	0.20% <u>(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u>	0.06%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적립금자산 평가액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u>5천만원 미만</u>	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u>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u>	0.25% <u>(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u>	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계약한 경우 0.15%)	0.03%)		경우 0%)	경우 0.03%)	일부 구간 수수료 인하
3의2. <생략> 가.~다. <생략> 라. <생략> <제3호의2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율 적용 예시>			1억원 이상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	0.06%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3 의 2. <좌동> 가.~다. <좌동> 라. <좌동> <제 3 호의 2 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율 적용 예시>			
기준지표 대비	사용자부담금		기준지표 대비	사용자부담금		
성과구간	1억미만	1 억 이상	성과구간	5 천만미만	5 천만이상 1 억이상	
초과 성과(A)	0.25% (0.15%)	0.20% (0.15%)	초과 성과(A)	0.25% (0.15%)	0.20% (0%)	<좌동>
동일(B)	0.20% (0.12%)	0.16% (0.12%)	동일(B)	0.20% (0.12%)	0.16% (0%)	<좌동>
미달 성과(C)	0.15% (0.09%)	0.12% (0.09%)	미달 성과(C)	0.15% (0.09%)	0.12% (0%)	<좌동>
※ () 안은 전자금융으로 신규 계약한 경우			※ () 안은 전자금융으로 신규 계약한 경우			
<신설>			3 의 3.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전자금융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10. <생략>			4.~10. <좌동>			
<신설>			11. 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여 이를 증명하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보험급여 결정			장해등급에 따른 면제 신설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② <생략> 제4조~제5조 <생략>	<u>통지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때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u> ② <좌동> 제4조~제5조 <좌동>	

■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5년 10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제29조 <생략> 제30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u><신설></u> 제31조~제32조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5년 3월 28일</u>부터 시행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제29조 <좌동> 제30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좌동> ② <좌동> <u>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u> 제31조~제32조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5년 10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반영 개정일 명시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제도를 적용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5년 10월 31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제2항제3의2호, 제2조제2항제11호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25년 4월 1일 이후 계약서 추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단서조항 삭제 및 개정사항 적용시기 명시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생략> 제1조 <생략> 제2조(수수료의 징수) ① <생략>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생략> 3. <생략> <table><tr><th>신탁재산 평가액</th><th>수수료율(연)</th></tr><tr><td>1억원 미만</td><td>0.20%</td></tr><tr><td>1억원 이상</td><td>0.18%</td></tr></table>	신탁재산 평가액	수수료율(연)	1억원 미만	0.20%	1억원 이상	0.18%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좌동> 제1조 <좌동> 제2조(수수료의 징수) ① <좌동> ② <좌동> 1.~2. <좌동> 3. <좌동> <table><tr><th>신탁재산 평가액</th><th>사용자 부담금 수수료율(연)</th><th>가입자 부담금 수수료율(연)</th></tr><tr><td>5천만원 미만</td><td>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20%)</td><td>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20%)</td></tr><tr><td>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td>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20%)</td><td>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20%)</td></tr></table>	신탁재산 평가액	사용자 부담금 수수료율(연)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율(연)	5천만원 미만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20%)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2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20%)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20%)	
신탁재산 평가액	수수료율(연)																
1억원 미만	0.20%																
1억원 이상	0.18%																
신탁재산 평가액	사용자 부담금 수수료율(연)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율(연)															
5천만원 미만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20%)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2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20%)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20%)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신설> 4.~10. <생략> <신설> ③ <생략>		<u>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u>	<u>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20%)</u>	일부 구간 수수료 인하
	1억원 이상	0.18% <u>(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u>	0.18% <u>(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8%)</u>	
	<u>3의2.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전자금융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u> 4.~10. <좌동> <u>11. 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여 이를 증명하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때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u> ③ <좌동>			장해등급에 따른 면제 신설